



# Monthly Tax Newsletter

---

Issue 120 | June 2024

삼정회계법인 세무본부 TKC

# Contents

## 법인세법

4

- [판례]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6. 2. 12. 대통령령 제26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9호의 '특수관계인'의 해석이 문제된 사건 (국승)
- [예규] 승계사업부 매각에 따른 소득금액에서 승계한 결손금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 [예규] 연결법인 결손금의 손금산입 방법

## 조세특례제한법

7

- [심판례] 전년도 미환류소득 산정 시 공제하였으나 공제한도에 따라 사업연도 소득에서 공제되지 아니한 이월결손금을 금년도 미환류소득 산정 시 다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각)
- [심판례] 국내근로소득에 대한 외국인 과세특례 적용 시 개정된 개정규정을 개정 이전 과세기간에 대하여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아 경정거부한 처분의 당부 (기각)
- [예규] 중소기업 졸업이후 재차 중소기업이 된 법인에 중소기업 졸업유예 적용 가능 여부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11

- [심판례] 청구법인이 해외생산법인에게 무형자산을 제공하고 사용료를 수취한 것과 관련하여, 처분청이 특정 해외생산법인과 의 정상가격을 이익분할방법으로 산정한 것에 대하여, 나머지 해외생산법인도 동일한 이익분할방법으로 정상가격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재조사)
- [예규] 비거주자에게 캐나다 부동산을 증여하고 캐나다에서 소득세를 납부하였을 경우 외국 납부세액공제 가능 여부

## 소득세법

13

- [심판례] 쟁점배당을 이익잉여금 배당으로 보아 법인세 및 종소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취소)
- [심판례]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에 대하여 간주배당으로 과세된 이후, 동 법인이 파산하여 배당가능성이 소멸하였다면 이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각)
- [심판례]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쟁점법인에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의제배당에 따른 종소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취소)

# Contents

##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

- [심판례] 사해행위취소 판결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증여가 취소되었으므로 수증자인 청구인에게 증여세 납부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각)
- [예규] 상속재산의 매매계약일이 감정가액 가격산정기준일(상속개시일)과 평가서 작성일 사이에 있어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은 어느 날인지 여부
- [예규] 상속개시 이후 이혼한 전 배우자의 분할연금이 확정된 경우 피상속인 채무 해당 여부

## 종합부동산세법

22

- [심판례] 전기통신업으로 사용되는 쟁점토지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에 따른 산업용 건축물등을 건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므로 종합부동산세 감면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취소)

## 지방세법

24

- [판례] 구 지방세법 제107조 본문 제1호 등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된 취득세·등록세 부과·추징을 위한 과세기준일이 부동산 취득일·등기일부터 기산하여 3년의 유예기간이 경과한 날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납세자승)
- [심판례]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어린이집 인가를 받은 후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쟁점부동산을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취소)
- [예규] 사모부동산 집합투자기구의 신탁재산 관련 부칙 적용 여부

## 관세법

28

- [심판례] 쟁점물품(반사방지막 코팅·프리즘패턴이 형성된 저철분강화유리)을 태양광 모듈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 제8541.90-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또는 기타 안전강화유리로 보아 HSK 제7007.19-1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법인세법

**[판례]**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6. 2. 12. 대통령령 제26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9호의 '특수관계인'의 해석이 문제된 사건 (국승)  
대법원 2024. 6. 13. 선고 2023두39809 판결

**[사안]** 소외 회사는 2012. 9. 21. 권면액 70억 원의 사모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였고, 원고 (당시 소외 회사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으로서 소외 회사의 주주)는 그 중 20억 원 상당의 신주인수권부사채("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하였음. 원고는 2013. 9. 26. 및 2014. 9. 22.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에서 분리된 신주인수권을 1주당 955원에 행사하여 소외 회사의 신주를 취득하였음. 피고는 원고가 그 소유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하고 그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주식으로 전환함으로써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이익을 분여받았다고 보아,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 제3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6. 2. 12. 대통령령 제26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9호("이 사건 규정")에 따라 원고에게 2014사업연도 법인세를 증액경정·고지하고, 2013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의 결손금을 감액경정하여 통지하였음.

**[판단]** 이 사건 규정은 '제8호의 2에 따른 자본거래로 인하여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을 수익의 하나로 규정하면서 이익을 분여한 '특수관계인'을 '주주 등인 법인'과 같이 법인 주주로 한정하고 있지 않은 점, 이 사건 규정의 '제8호의 2에 따른 자본거래'는, 제8호의 2의 '제8호 외의 경우로서 증자·감자, 합병·분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 제1항에 따른 전환사채 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인수·교환 등 법인의 자본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와 대응되므로, 이 사건 규정은 제8호의 2에서 규정한 자본거래의 유형만 인용한 것으로 해석함이 자연스러운 점, 당초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9호는 수익의 하나로 '제88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자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을 규정하였는데, 법인세법 시행령이 2000. 12. 29. 개정되면서 위 규정은 '제88조 제1항 제8호 각 목의 규정에 의한 자본거래로 인하여 특수관계자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으로 개정되었고, 그 취지는 자본거래의 유형만을 인용함으로써 이익 분여자가 개인 주주인 경우에도 그 분여받은 이익이 수익에 포함된다는 것을 명확히 하려는 데 있는 점, 이 사건 규정은 일정한 유형의 자본거래로 인하여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을 법인세 과세대상으로 포착하여 과세하는 규정으로, 이익 분여자가 법인 주주인지 개인 주주인지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진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규정에서 말하는 '특수관계인'은 법인 주주뿐만 아니라 개인 주주도 포함한다고 해석하여야 함.

**[ 코멘트 ]**

- 원심은 이익 분여자가 법인 주주인 경우에만 이 사건 규정이 적용된다는 전제에서, 특수관계인인 개인 주주들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은 이 사건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으나(서울고등법원 2023. 3. 21. 선고 2022누53299 판결), 대법원은 이를 파기환송함.
- 과거 대법원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6. 2. 9. 대통령령 제193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9호에서 인용하고 있는 ‘제88조 제1항 제8호 각목’은 그 행위주체를 주주등인 법인으로 규정한 동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의 본문 부분, 즉 ‘주주등인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다른 주주등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를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동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각목에 규정한 3가지 자본거래의 유형만을 인용한 것으로 보이고, 또한 위 시행령 제11조 제9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수관계자인 이익분여자를 법인 주주로 한정하여야 할 특별한 이유도 없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음(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두29779 판결, 원심 서울고등법원 선고 2011. 11. 3. 2011누19828 판결).

## [예규] 승계사업부 매각에 따른 소득금액에서 승계한 결손금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사전-2023-법규법인-0170, 2024. 5. 8.

합병법인이 유리제조업을 영위하는 피합병법인을 적격합병한 후 해당 사업을 영위하던 중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사업부 전체를 매각한 경우 사업부 전체를 매각함에 따라 발생한 처분이익은 법인세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 해당하는 것임.

### [ 코멘트 ]

- 대상예규 사안의 경우 질의법인(합병법인)은 완전자회사인 피합병법인을 흡수합병(적격합병)한 후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모두 승계하고, 합병 이후 승계결손금 중 일부를 법인세 신고 시 구분경리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사업인 유리사업부에서 발생한 소득 한도 내에서 이월결손금 공제를 신고하였고, 2022. 12. 31. 기준 잔액이 일부 남아 있었음. 그리고 유리사업부에 대한 영업양도계약을 체결한 후 사업부매각이익(유형자산처분이익 및 재고자산 처분손실)을 인식하였는데, 매각한 승계사업부문의 유형자산의 대부분은 합병등기일 전부터 피합병법인의 승계사업부문에서 소유한 유형자산이나, 그 일부는 합병등기일 이후 새로 취득하여 승계사업부문에서 사용되는 자산인 경우임.

## [예규] 연결법인 결손금의 손금산입 방법

사전-2024-법규법인-0241, 2024. 5. 31.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내국법인(“연결배제법인”)이 다른 연결법인(“합병법인”)에 흡수합병된 후, 해산등기일이 속하는 연결사업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하여 각 연결법인들의 소득금액과 합한 경우로서 이후, 합병법인이 연결모법인의 연결지배를 받지 아니하게 되어 법인세법 제76조의 12 제1항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지 않게 된 경우 합병법인은 다른 연결법인의 소득금액과 합한 연결배제법인의 결손금을 연결배제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전액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 코멘트 ]

- 종전 다른 연결법인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 피합병법인의 결손금을 합병법인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전액 손금 산입이 가능하다는 견해(갑설)와 손금에 산입할 수 있으나, 합병으로 소멸된 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범위에서 공제가 가능하다는 견해(을설), 그리고 전액 손금 산입이 불가하다는 견해(병설)의 대립을 상정해 볼 수 있는데, 대상예규는 갑설을 취한 것임.

## 조세특례제한법

**[심판례]** 전년도 미환류소득 산정 시 공제하였으나 공제한도에 따라 사업연도 소득에서 공제되지 아니한 이월결손금을 금년도 미환류소득 산정 시 다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각)

조심 2023서7744, 2024. 4. 11.

**[사안]** 청구법인은 2017사업연도부터 2021사업연도까지 미환류소득을 계산하면서 누적된 이월결손금의 재차 차감이 이루어지지 않아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 32 제1항에 따른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다하게 산정하여 납부하였다는 이유로 2022. 10. 20. 기 납부한 법인세 합계 (2017사업연도분, 2018사업연도분, 2021사업연도분, “쟁점청구세액”)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거부함.

**[판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 32 제4항 제2호 라목에 따르면 법인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에 공제한 결손금’을 기업소득 산정 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가운데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관련한 기업소득 산정에 있어 이월결손금 재차 차감(공제)이 가능하다는 명시적인 규정은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비록 2022년 해당 법령의 개정으로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관련 기업소득 산정 시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공제대상이 되는 결손금은 ‘해당 사업연도에 공제할 수 있는 결손금’으로 변경되었으나, 이러한 내용의 법령의 개정만으로 2021사업연도 이전에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관련한 기업소득 산정 시 이월결손금 재차 차감(공제)이 가능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비교내역 <표>에서의 그 비교내역을 보면 이월결손금이 100임에도 ×01년부터 ×02년까지 미환류소득 계산과 관련된 기업소득 산정 시 공제한 결손금은 100이 아닌 140(재차 공제 40)이 발생하게 되고, 이월결손금을 공제할 경우 2년간의 기업내부에 실제 유보한 소득이 100(=200-100)임에도 60(=200-100-재차 공제 40)에 대해서만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산정하게 되어 그 실제 유보한 소득(100)보다 과소한 미환류소득(60)에 대한 법인세가 계산되게 되어 불합리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 코멘트 ]

- 대상심판례의 판단부분에서 실시하고 있는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비교내역’은 아래와 같음.

구분	내용	x01년	x02년	합계
각 사업연도 소득		100	100	200
일반법인세	이월결손금 (100) 공제	60 (공제한도 60% 적용)	40	100
	과세표준	40	60	100
미환류법인세	이월결손금 (100) 공제	100 (공제한도 적용X)	40	140
	기업소득	0	60	60

- 기재부와 감사원은 미환류소득 계산 시 차감하는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 받은 이월결손금을 이후 사업연도에도 계속하여 차감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부정적인 입장을 취한 바 있음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33, 2022. 8. 24.; 감심-2023-396, 2024. 1. 9.).



**[심판례] 국내근로소득에 대한 외국인 과세특례 적용 시 개정된 개정규정을 개정 이전 과세기간에 대하여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아 경정거부한 처분의 당부 (기각)**  
 조심 2023서10372, 2024. 4. 30.

**[사안]** 청구인은 미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05. 9. 20.부터 현재까지 A사(“쟁점법인”)에서 근무하고 있음. 청구인은 쟁점법인에서 발생한 2019년~2022년(“쟁점과세기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55조에 따른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각각 신고한 후, 쟁점과세기간 귀속 근로소득이 2022. 12. 31. 법률 제19199호로 일부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 2 제2항(“개정규정”)에 따라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적용대상에 해당(적용세율 19%)한다는 사유로 2023. 6. 7. 처분청에 일반세율 적용 시 세액과 단일세율 적용 시 세액과의 차액에 해당하는 쟁점과세기간 귀속분 종합소득세 합계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개정규정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20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받는 근로소득에 대하여 적용하여야 하고 2023. 1. 1.부터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쟁점과세기간 귀속 근로소득에는 개정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함.

**[판단]** 개정규정의 부칙 제10조에 따라 개정규정의 시행 당시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않은 외국인근로자도 개정규정을 적용하게 되나, 2022. 12. 31. 개정된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에 따라 2023. 1. 1. 이후에 적용되므로 쟁점과세기간에 소급하여 개정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개정규정은 2023. 1. 1.부터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쟁점과세기간 귀속 근로소득에는 개정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 코멘트 ]

- 2022. 12. 31. 조세법 제18조의 2(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개정 시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특례 적용기간을 종래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5년간”이었던 것을 20년으로 확대하였음.
- 조세심판원은 2013년 이전 국내에 근로하던 외국인근로자가 출국하였다가 2014년 이후 재입국해 국내 근로한 경우에는 2014. 1. 1. 이후 최초로 재입국하여 근로를 제공한 날을 국내 근무시작일로 해석한 바 있으며(조심 2021서2652, 2021. 8. 11. 등), 기재부는 2014년 1월 1일 현재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의 경우에는 2014년 1월 1일을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로 보는 것으로 해석한 바 있음(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35, 2023. 2. 21.).

## [예규] 중소기업 졸업이후 재차 중소기업이 된 법인에 중소기업 졸업유예 적용 가능 여부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371, 2024. 5. 3.

중소기업이었던 법인이 독립성 기준 미충족으로 유예없이 비중소기업이 되었다가 다시 중소기업이 되었고, 이후 매출액 증가로 비중소기업이 된 경우 중소기업 졸업유예기간(조특령§2②)을 적용 불가함.

### [ 코멘트 ]

- 국세청은 종전까지 중소기업에 해당하던 법인이 자기자본이 1천억원을 초과한 사업연도에 실질적 독립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다음 사업연도에 실질적 독립성 요건을 다시 충족하더라도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음(법규법인2014-486, 2014. 11. 21.).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심판례]** 청구법인이 해외생산법인에게 무형자산을 제공하고 사용료를 수취한 것과 관련하여, 처분청이 특정 해외생산법인과 의 정상가격을 이익분할방법으로 산정한 것에 대하여, 나머지 해외생산법인도 동일한 이익분할방법으로 정상가격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재조사)

조심 2022중5394, 2024. 4. 11.

**[사안]** 청구법인은 헝가리, 미국, 중국, 인도네시아 등 현지에 해외생산법인을 설립하여 해외생산법인에게 타이어 생산기술 등 무형자산을 제공하고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을 적용하여 산정한 사용료를 수취하고 있음. 서울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통합조사 결과 위 해외생산법인 중 헝가리법인의 경우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2017. 12. 19. 법률 제15221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구 국조법”) 제5조 제1항 제4호의 이익분할방법의 적용이 타당한 것으로 보아 이에 따라 산출한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청구법인의 소득금액을 조정하였음. 이에 대해 청구법인은 중국, 인도네시아 법인과 의 무형자산 거래도 그와 실질이 동일하다는 사유로 같은 방법에 따라 산출한 정상가격에 따라 소득금액을 감액조정하고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액 계산 시 국외원천소득에서 차감하는 간접경비를 재계산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외국납부세액 한도 재계산 청구부분 중 일부만 경정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음.

**[판단]** 서울지방법국세청장은 2018년 8월 청구법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헝가리생산법인의 경우, 다른 해외생산법인과 동일하게 사용료를 부담하고 있음에도 과도하게 영업이익을 향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무형자산 사용 거래 외에 청구법인이 지원하는 글로벌마케팅 및 고부가가치용역을 특수한 형태의 무형자산 거래로 통합하고, 이와 비교가능한 거래가 없다는 사유로 거래이익분할방법을 적용하여 무형자산 사용료의 정상가격을 산출하였으나, ①영업이익의 차이가 있다고 하여 서로 다른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기는 부족한 점, ②청구법인의 각 해외생산법인이 이를 사용하여 수행하는 기능과 부담하는 위험의 정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거래이익분할방법은 특수관계인 양쪽이 함께 실현한 이익을 각자의 기여에 비례하여 분할하는 것이 합리적일 때 적용하는 방법이므로 처분청의 의견과 같이 중국·인도네시아생산법인의 경제적 특성이 헝가리생산법인에 비해 청구법인에 대한 의존도가 낮은 라이선스 제조업자에 해당한다면, 헝가리생산법인과 의 거래보다 중국·인도네시아와의 거래에 대하여 거래이익분할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오히려 더 합리적으로 보이는 점, ③이익분할방법은 특수관계인 쌍방이 함께 실현한 결합이익(일부 상황에서는 결합손익)을 각자의 상대적 공헌도에 따라 배부하고 이를 기초로 산출한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으로써 그 결과가 항상 이익으로 귀결된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법인과 중국·인도네시아생산법인 간 무형자산 거래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으로 구 국조법 제5조 제1항 제4호의 이익분할방법을 적용하되,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9. 02. 12. 대통령령 제29525호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의 상대적 공헌도 등의 고려사항에 따라 정상가격을 재조사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 코멘트 ]

- OECD 이전가격 과세지침에 따르면, 정상거래원칙은 다국적기업 그룹내의 기업들을 분리할 수 없는 하나의 통합체로 보는 것이 아니라 독립기업으로 취급하는 접근방법을 따르는데, 이러한 독립기업접근법(separate entity approach rule)은 다국적기업그룹내의 기업을 독립기업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그 기업들 간 거래조건을 중시하며, 정상가격원칙은 가장 정확한 시장가격을 측정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개별거래기준(transaction by transaction basis)을 적용하여야 함(OECD 이전가격 과세지침 1.6, 3.9).
- 대상심판례는 청구법인이 헝가리법인과 거래에서 적용한 이익분할법을 중국-인도네시아와의 거래에 대하여도 적용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으나, 그 판시내용을 살펴볼 때에 이는 단순히 각 해외 생산법인과 거래에서 적용될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통일하여야 한다는 취지라기 보다는 중국-인도네시아법인의 청구법인에 대한 의존도가 낮아 특수관계인 양측이 무형자산 형성에 관여함에 따라 각자의 기여에 비례하여 그 이익을 분할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 해당하여 이익분할법의 적용이 보다 타당하다는 것인바, OECD 이전가격 과세지침에서 제시한 개별거래기준에 배치되지 않는 것으로 보임.

### [예규] 비거주자에게 캐나다 부동산을 증여하고 캐나다에서 소득세를 납부하였을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 가능 여부

서면-2023-법규국조-3283, 2024. 5. 31.

한국 거주자가 특수관계인인 캐나다 거주자(한국 비거주자)에게 캐나다 소재 부동산을 증여하고 이에 대하여 캐나다 소득세법에 따라 증여 당시의 시가와 취득가액 등의 차액에 대해 납부한 소득세 상당액은 외국납부세액공제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임.

## [ 코멘트 ]

- 국조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은 “법 제35조 제5항에 따라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증여세 납부액은 다음 각 호의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으로서 법 제35조 제2항에 따른 증여세 납부의무자가 실제로 외국정부(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납부한 세액(“외국납부세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증여를 원인으로 과세하고, 그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외국의 법령에 따라 부과된 조세(실질적으로 이와 같은 성질을 가지는 조세를 포함)의 세액’을 규정함.
- 대상예규는 캐나다 소득세법에 따라 증여 당시의 시가와 취득가액 등의 차액에 대해 납부한 소득세 상당액은 위 제1호에 따른 외국납부세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한 것으로 보임.

## 소득세법

### [심판례] 쟁점배당을 이익잉여금 배당으로 보아 법인세 및 종소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취소)

조심 2023서7399, 2024. 4. 29.

**[사안]** 청구법인은 동일업종이자 자회사인 B사(“흡수합병법인”)를 2008년 5월 흡수합병하고(합병전 청구법인과 흡수합병법인은 재평가적립금을 각각 보유), 합병하면서 청구법인의 재무제표상 청구법인이 보유한 재평가적립금은 그대로 자본잉여금인 재평가적립금으로, 흡수합병법인 보유 재평가적립금은 청구법인의 주식발행초과금(“쟁점주식발행초과금”)으로 전환하였음. 청구법인은 2017~2020년에 걸쳐 쟁점주식발행초과금 중 일부를 감액하여 사주 C, D, E 일가(C 등 3인 및 청구법인을 포함하여 “청구인들”)와 특수관계법인 등 4인에게 현금배당(“쟁점배당”)이라 하고, 금액을 이하 “쟁점배당금”)하였음(청구인들은 쟁점배당에 대해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 3 제6항에 따른 자본준비금의 감액 배당으로 보아 관련 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함). 국세청 감사담당관실은 서울지방국세청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면서, 청구인들의 쟁점배당은 「자산재평가법」에 의해 배당을 금지하고 있는 재평가적립금을 감액하여 현금배당하고, 자본준비금의 감액은 감액결의한 연도에 배당할 수 없어 배당지급연도에 자본준비금 감액분 배당재원이 없음에도 배당하여 이를 회사의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배당한 것으로서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회사의 이익이나 잉여금을 지급한 소득세 과세대상인 배당소득으로 보아 각 청구인들에게 관련 종합소득세를 부과하고, 청구법인에게 이에 대한 지급명세서미제출가산세를 과세하도록 처분청에 자료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청구인들과 청구법인에게 종합소득세 및 법인세를 부과하였음.

**[판단]** 처분청은 쟁점배당의 재원이 배당할 수 없는 피합병법인의 재평가적립금임에도 현금배당하였으므로 이는 배당소득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나, 세법은 법인의 자본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고 「상법」을 준용하고 있고, 상법 제459조 제2항은 합병이나 제530조의 2에 따른 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경우 소멸 또는 분할되는 회사의 이익준비금이나 그 밖의 법정준비금은 합병·분할·분할합병 후 존속되거나 새로 설립되는 회사가 승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법무부도 일반적인 합병의 경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이 시행된 이후에는 공정가치법(취득법)이 적용되어 피합병회사(소멸회사)의 자본계정 내 항목들은 소멸하고 합병후 존속회사의 주식발행초과금(자본준비금) 등으로 변경되고, 다만 지배·종속기업간 합병은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에 따른 장부금액법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른 공정가치법을 선택하여 회계처리할 수 있고, 장부금액법을 선택한 회사가 합병계약서와 합병승인총회에서 「상법」 제459조 제2항에 따라 이익준비금이나 그 밖의 법정준비금 승계를 결정한 경우 소멸회사의 준비금을 같은 명목의 준비금으로 승계해야 하므로, 자본준비금은 자본준비금으로, 이익준비금은 이익준비금으로 승계하여야 하며, 다른 법률에 의한 법정준비금(예 : 재평가적립금)도 역시 같은 성격의 준비금으로 승계해야 한다고 회신한 점(1AA-2311-01015\*\*) 등으로 고려하면 합병시점에서 자본구성의 변화가 불가피하게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질의한 이 건 사안에 대하여 기획재정부는 예규를 통하여 피합병법인의 재평가적립금에 해당하는 합병차익을 감액하여 배당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18조 제8호에 따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이라고 회신한 점(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판단] 328, 2023. 6. 14.), 적격합병차익 중 3% 재평가적립금에 해당하는 것에 대한 의제배당 과세 조  
 \_계속 향인 법인세법 제18조 제8호를 개정하면서 그 시행시기를 2024. 1. 1. 이후 자본준비금을 감액하  
 여 받는 배당금액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되, 쟁점배당과 같이 그 전에 이루어진 적격합병으로, 피  
 합병법인의 3% 재평가적립금을 재원으로 한 이 건 합병차익에 대하여 의제배당 규정을 적용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재평가적립금은 「자산재평가법」에 따라 평가한 별도의 적립금으로서 「상법」상  
 규정한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자산 및 부채에 대한 평가나 기타포괄손익누계액과는 다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동일한 연도의 주주총회에서 감소된 준비금을 재원으로 이익배당 결의를 하는  
 것이 「상법」에 위반되어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쟁점배당을 이익잉여금의 배당으로 보  
 아 법인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 [ 코멘트 ]

- 대상심판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기재부 예규(법인세제과-328)는 비공개인 것으로 보임.
- 기재부는 대상심판례 사안과 같은 피합병법인의 재평가적립금이 아닌 일반 재평가적립금의 경우  
 “「자산재평가법」 제28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분하지 못하는  
 것이며, 재평가적립금을 감액하여 주주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에 따라 과세대  
 상이 되는 것”이라고 회신한 바 있음(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51, 2023. 3. 6.).

**[심판례]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에 대하여 간주배당으로 과세된 이후, 동 법인이 파산하여 배당가능성이 소멸하였다면 이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 (기각)**

조심 2022서6405, 2024. 5. 8.

**[사안]** 청구인은 버진아일랜드 소재 외국법인(“A사”)의 1인 주주이고, A사의 완전 자회사인 B사는 2008. 9. 2. 러시아 소재 외국법인인 C사의 주식 70%를 취득하였음. A사는 2008. 10. 31. 홍콩 증권거래소 우회상장 목적으로 홍콩 소재 상장법인인 D사의 완전 자회사인 E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A사가 보유한 B사 주식의 90%를 양도하고, 그 대가로 D사가 발행한 전환사채를 취득하는 것으로 약정(“쟁점인수계약”)하였음. 쟁점인수계약에 따라 A사는 각각 2009·2010사업연도에 전환사채를 인수하여 E주식(상장주식)으로 전환한 후 매각하여 2009·2010사업연도에 처분전이익잉여금이 각각 발생하였음. 처분청은 A사의 재무상태표상 처분전이익잉여금에 우발부채와 유가증권평가손실을 가산한 금액(2010년·2011년 귀속분)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국조법”) 제17조(특정의국법인의 유보소득의 배당간주에 관한 규정)로서, “CFC규정”에 따라 청구인의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2010년·2011년 귀속분)을 경정·고지하였음. 이후 A사의 채권자가 2021. 7. 9. 버진아일랜드 법원에 A사의 파산을 신청하여 2021. 9. 27. A사의 파산이 결정되자, 청구인은 A사로부터 배당을 받을 가능성이 소멸되었으므로 2010·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환급을 구하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거부함.

**[판단]** CFC규정 등에서 각 사업연도 말 현재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 중 내국인에게 귀속될 금액은 내국인이 배당받은 것으로 간주되고, 이 때 배당가능유보소득은 특정외국법인의 거주지국에서 재무제표 작성 시에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에 의하여 산출한 처분전이익잉여금에서 이익잉여금 처분에 따른 금액 등을 공제하거나 가산하여 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이는 저세율국가 등에 공회사를 설치하여 소득을 부당하게 유보하는 경우 등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에 따라 도입되었고, 실제 배당이 가능할 것을 전제로 하지는 않는다고 할 것(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두1243 판결)임. 거주지국(버진아일랜드)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에 따라 2009·2010사업연도 A사의 처분전이익잉여금이 산정되었고, CFC규정에 따라 청구인에게 배당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청구인에 대한 2009·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확정(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8두37090 판결)된 점, 설령 광산개발사업의 지연 및 D사와의 계약 조건 등에 따라 쟁점대여금이 회수불가능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차후 사업연도의 대손사유에 불과할 뿐이고, 이로 인하여 A사의 2009·2010사업연도 처분전이익잉여금이 변동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앞서 살펴본 CFC규정의 취지와 내용 등을 감안할 때, CFC규정은 배당가능 유보소득이 발생하면 주주들에게 배당소득이 귀속됨을 간주하는 간주규정이라 할 것이고, 배당소득이 실현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되었다는 등의 사후적인 사정에 의한 반증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1995. 2. 17. 선고 94다52751 판결)고 할 것인 점, 청구인은 A사의 1인 주주로 배당가능 유보소

[판단] 특이 발생하였을 당시 A사로부터 배당을 받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D사 주식 매각대금 중 일  
\_계속 부가 청구인에게 귀속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A사의 파산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제2항에 규정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  
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코멘트 ]

- 대법원은 납세의무 성립 후 소득의 원인이 된 채권이 회수불능이 된 경우를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바 있음(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3두18810 판결).



## [심판례]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쟁점법인에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의제배당에 따른 종소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취소)

조심 2023서6845, 2024. 6. 3.

**[사안]** 청구인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쟁점법인의 최대주주로, 자녀인 A와 B(“A 등”)에게 청구인이 보유하던 쟁점법인 발행주식 중 각 292주 합계 584주(“쟁점주식”)를 증여하였음. 이후 쟁점법인은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이익소각의 목적으로 자기주식 취득을 결정함에 따라 청구인 보유의 쟁점법인 발행주식 40주 및 쟁점주식을 1주당 평가금액으로 양수한 후 다음 날 이를 이익소각하였음. A 등은 쟁점주식을 위 양도가액과 동일하게 1주당 평가하고 각각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여 증여분 증여세를 각각 신고·납부하였음. 처분청은 청구인이 A 등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한 후 A 등이 쟁점법인에 쟁점주식을 양도하고 쟁점법인이 이를 유상소각한 것은 “실질적으로 청구인이 쟁점법인에게 쟁점주식을 직접 양도한 후 그 소각대금을 자녀들에게 증여한 행위”에 해당하고, 이러한 우회적인 거래를 이용함으로써 청구인의 의제배당소득이 누락되었다고 보아 의제배당소득금액을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하여 청구인에게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음.

**[판단]** 이 건의 경우 주식증여계약, 주식매매계약 및 주식소각이라는 일련의 행위 또는 거래는 법률상 유효하게 성립된 것으로 가장행위로 단정할 근거가 없고, 쟁점주식의 수증자인 A 등은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증여받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쟁점주식을 평가해서 증여재산공제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정상적으로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쟁점법인도 「상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임시주주총회 결의 등을 거쳐 A 등으로부터 쟁점주식을 매입하여 소각함으로써 쟁점법인의 발행주식수를 감소시키는 등 그 절차가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자녀들에게 ‘주식’을 증여할 것인지 ‘현금’을 증여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인 청구인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이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재산 공제한도가 인정되는 상황에서 이 건 증여 및 양도 거래에 있어서 증여공제 제도를 통하여 절세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재산공제 한도는 5,000만원에 불과하고 수증자들 중 일부는 공제를 적용받지 아니하여 이로써 절감할 수 있는 증여세액은 미미할 뿐만 아니라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증여재산가액과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이 동일하여 A 등이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지 않게 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이 건 증여 및 양도 거래가 의제배당소득세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불합리한 외관이 나 형식을 갖추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A는 쟁점주식 양도대금을 이 건 증여세 납부 및 자신의 주택 구입비용으로 대부분 사용하였고, B도 쟁점주식 양도대금을 이 건 증여세 및 자신의 전세보증금 지급 등에 모두 사용하였으므로 위 양도대금은 A 등의 이익으로 귀속되었을 뿐 이후 동 대금이 수증자들을 거치는 등의 방법으로 증여자인 청구인에게 반환되거나 청구인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였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고 이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다툼이 없는 점, 그 밖에 청구인의 경우 고령자여서 자신이 사망한 후 상속재산 분쟁, 경영권 승계 문제 등에 관심이 커서 조세 회피목적 외에 다른 경제적 목적이 존재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바, 청구인이 세법규정이나 세법상 허용되는 제도 등을 활용하여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자녀들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한 것을 이례적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처분청과 같이 이 건 거래를 주식소각 후 현금증여 거래로 재구

**[판단]** 성할 경우 청구인과 A 등은 쟁점주식 증여로 인하여 증여세 및 종합소득세의 세금을 부담하게 되  
 \_계속 어 지나치게 과중하다 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은 청구인의 증여행위로 수증자인 A 등  
 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후 A 등에 의하여 양도가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임.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거래를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쟁점법인에 직접 양도한 후 그 양도대금을 자녀들에  
 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  
 는 것으로 판단됨.

#### [ 코멘트 ]

- 대상심판례는 수증자가 직계비속인 경우인데, 이와 달리 수증자가 배우자인 사안에서, 조세심판원  
 은 청구인이 선택한 법적 형식이 배우자에 대한 증여재산공제를 이용하여 기존에 발생한 주식에 대  
 한 자산가치 증가분에 대해 양도소득세와 증여세를 모두 면하는 등의 조세회피목적에서 비롯된 것  
 으로 보아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거래를 재구성한 후 납세자에게 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  
 를 과세한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바 있음(조심 2020부1593, 2020. 9. 15.).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심판례] 사해행위취소 판결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증여가 취소되었으므로 수증자인 청구인에게 증여세 납부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각)**  
 조심 2024부1868, 2024. 5. 20.

**[사안]** 청구인은 2020. 9. 8. 부친 A으로부터 경상남도 소재 대지 및 건물(“쟁점부동산”)을 증여받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2020. 9. 9.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해당 증여세를 기한 후 신고·납부(“1차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증여분 증여세를 결정·고지하였음. 이후 모친 B가 부친을 상대로 제기한 이혼 등 청구사건의 사해행위취소 판결에 따라 쟁점부동산에 대한 2020. 9. 9.자 소유권이전등기는 2022. 10. 25. 말소되었고, 같은 날 지분 1/2이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B에게 소유권이전되었음.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나머지 지분 1/2에 대하여 A를 피고로 위 2020. 9. 8.자 증여계약 등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2023. 6. 8.자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2023. 7. 6. A로부터 현금을 수령하였음. 청구인은 2023. 9. 18. 처분청에 현금 증여에 대한 2023. 7. 6. 증여분 증여세를 신고·납부(“2차 신고”)하는 한편, 쟁점부동산의 증여에 대한 1차 신고에 관하여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경정청구를 거부하였고, 이후 청구인은 현금의 증여에 대한 2차 신고에 관하여 경정청구를 제기하여 처분청으로부터 해당 증여세를 환급받았음.

**[판단]** 청구인은 사해행위취소 소송에 따라 청구인이 증여받은 쟁점부동산은 없어졌으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상 쟁점부동산의 증여에 대한 증여세 부과는 잘못이라고 주장하나, 채권자가 사해행위의 취소와 함께 수익자로부터 책임재산의 회복을 구하는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한 경우 그 취소의 효과는 채권자와 수익자의 관계에서만 생기는 것이므로 수익자가 사해행위의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 또는 이에 갈음하는 가액배상을 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채권자와의 관계에서 생기는 법률효과에 불과하고 채무자와의 사이에서 그 취소로 인한 법률관계가 형성되는 것은 아니며 그 취소의 효력이 소급하여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회복되는 것도 아니라 할 것(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두1406 판결)인바, 청구인이 부친 A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은 후 채권자인 모친이 수익자인 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결과 쟁점부동산의 증여행위가 취소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청구인이 A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아 발생한 증여세 납세의무까지 소멸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인 점(조심 2015서4517, 2015. 12. 7. 외 다수, 같은 뜻임), 청구인이 드는 판례(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두48471 판결)는 국가가 조세채권자로서 제기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의 판결의 효력은 국가의 하부기관인 과세관청에 미친다는 내용으로서, 개인이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처분청이 제3자인 이 건과는 사실관계가 달라 원용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 코멘트 ]**

- 국민권익위는 2022. 7. 11. 양도 재산에 대해 과세관청이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해 그 결과 재산이 증여자에게 되돌아갔다면 당초 부과한 증여세를 취소해야 한다며, “이미 성립한 납세의무는 취소되지 않는다”는 법령해석을 변경할 것을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의견을 표명하였음.
- 이후 기재부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국세징수법」 제25조에 따라 해당 사해행위의 취소를 법원에 청구하여 해당 사해행위가 취소된 경우 수증자의 증여세 납세의무는 취소되는 것”이라고 회신하였으며(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576, 2022. 12. 23.), 감사원도 이를 수용하는 해석한 바 있음(감심 2022-259, 2023. 3. 9.).
- 기재부와 감사원의 사안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사해행위의 취소를 청구한 경우이고, 대심심판례의 사안은 제3자가 사해행위의 취소를 청구한 경우로, 조세심판원이 기재부나 감사원과 달리 위 국민권익위의 의견을 채택하지 않은 것인지는 명확하지 아니함.

**[예규] 상속재산의 매매계약일이 감정가액 가격산정기준일(상속개시일)과 평가서 작성일 사이에 있어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은 어느 날인지 여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23, 2024. 5. 1.

평가기간 이내 매매계약일이 감정가액의 가격산정기준일(상속개시일)과 평가서 작성일 사이에 있어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매매가액, 감정가액)인 경우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은 매매계약일임.

**[ 코멘트 ]**

-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에 따르면, 평가기준일에 가까운 시가 판정 시 감정가액은 가격산정기준일과 평가서 작성일 두 개 모두를 고려해야 함.
- 대상예규의 사안은 매매계약일(‘20. 12. 18.)이 감정가액 산정기준일(‘20. 7. 24.)과 감정평가서 작성일(‘21. 1. 13.) 사이에 있는 경우임.

**[예규] 상속개시 이후 이혼한 전 배우자의 분할연금이 확정된 경우 피상속인 채무 해당 여부**  
 사전-2023-법규재산-0871, 2024. 5. 30.

피상속인의 이혼한 전 배우자가 상속개시 전 획득한 분할연금수급권을 기반으로 상속개시일 이후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22조 제2항에 따른 분할연금지급청구서를 제출하여, 국민연금공단이 피상속인이 기 수령한 노령연금 중 일부를 「국민연금법」 제64조에 따른 이혼한 전 배우자의 분할연금으로 확정된 후 같은 법 제57조에 의하여 해당금액을 피상속인의 상속인에게 환수하는 경우 해당 환수금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피상속인의 채무에 해당하는 것임.

**[ 코멘트 ]**

- 대상예규 사안의 경우 이혼한 전 배우자는 「국민연금법」 제64조 제1항에 따라 피상속인의 노령연금 중 일부를 지급 청구할 수 있는 분할연금수급권을 득하였으나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22조 제2항에 따른 지급청구서를 제출하지 않아 분할연금을 수령하지 않고 있다가, 피상속인이 사망한 이후에 국민연금공단에 분할연금 지급청구서 제출하였고, 이에 따라 피상속인이 생전에 기 수령한 노령연금 중 일부가 이혼한 전 배우자 몫의 분할연금액이 되고, 피상속인에게는 과오지급된 것이 되어 「국민연금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환수 결정된 것임.

## 종합부동산세법

**[심판례] 전기통신업으로 사용되는 쟁점토지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에 따른 산업용 건축물등을 건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므로 종합부동산세 감면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취소)**

조심 2021서5197, 2024. 5. 8.

**[사안]**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은 2016년도 및 201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6. 1.) 전기통신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 청구법인 소유토지 전체(100%)에 대하여 ‘연구개발업’ 용도의 건축물 사용 예정 부속토지로 보아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2. 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4항 다목에 따라 재산세의 50%를 감면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종합부동산세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준용하여 청구법인에게 종합부동산세를 결정·고지함. 이후 강서구청장은 2019년 1월 청구법인 소유토지의 47.06%에 해당하는 6,266.5㎡만을 ‘연구개발업’ 용도의 건축물 부속토지로 사용한다고 보고, ‘전기통신업’으로 사용된 건축물에 해당하는 부속토지의 면적(청구법인 소유토지의 48.71%로 “쟁점토지”)을 감면대상에서 제외하여 청구법인에게 재산세를 추가 고지한 후 처분청에 종합부동산세 수시세액 조정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2016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2017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2016년 귀속분과 2017년 귀속분을 합하여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각 경정·고지함.

**[판단]** 청구법인이 이 건 종합부동산세 부과 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제기(2021. 8. 11.)한 이후 2023 6. 27. 조세심판원은 쟁점토지가 포함된 청구법인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4항이 정한 산업단지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법인이 제기한 심판청구를 인용 결정(조심 2021지3340, 2023. 6. 27., “쟁점심판결정”)한 바 있고, 쟁점심판결정의 취지는 “서울특별시장은 2011. 12. 29. ‘A구역 도시개발사업 1지구, 2지구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를 통해 ‘전기통신업’을 일반산업단지 입주업종으로 지정한 점, 청구법인은 기간통신사업과 부가통신사업 등 전기통신공사를 주 목적으로 하고 있고 일반산업단지에 소재한 청구법인 소유 부동산에서 5G 신규 서비스 개발, 네트워크 운영 및 품질관리, 모바일 관련 서비스 제공, 전기통신설비 구축 지원, 네트워크 관련 서비스 제공, 초고속인터넷, 인터넷전화 서비스 제공 등 ‘전기통신업’을 영위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이 소유 부동산에서 영위하는 ‘전기통신업’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문 분야의 지식을 기반으로 하여 창의적 정신활동에 의하여 고부가가치의 지식서비스를 창출하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지식산업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산업의 집적을 활성화하고 공장의 원활한 설립을 지원하고자 제정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청구법인이 소유 부동산에서 영위하는 4G/5G, IOT 등 고부가가치 통신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전기통신업’을 첨단기술과 산업의 범위에 「산업발전법」에서 ‘전기통신업’을 지식서비스산업의 범위에 각 포함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전기통신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취득한 일반산업단지 시행사업 내 청구법인 소유 부동산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4항에 따라 취득세가 면제되는 산업용 건축물인 ‘지식산업’에 해당한다”는 것임. 이러한 점 등을 종합

**[판단]** 하여 보면 비록 강서구청장이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함에 따라 환  
\_계속 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2016년도 및 2017년도 재산세의 경우 2019년도~2023년도  
재산세와 마찬가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4항이 규정한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규정 적  
용 대상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그렇다면 종합부동산세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이 건 종합부  
동산세도 감면대상으로 보아야 할 것임.

#### [ 코멘트 ]

- 대상심판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쟁점심판결정은 비공개인 것으로 보임.
- 지방세 감면대상인 산업용 건축물등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식산업용 건축물 등을 말하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서 지식산업이란 컴퓨터소프트웨어개발업·연구개발업·엔지니어링서비스업 등 전문 분야의 지식을 기반으로 하여 창의적 정신활동에 의하여 고부가가치의 지식서비스를 창출하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산업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으나 그 세부업종을 구체적으로 위임하는 규정은 없음.
- ‘전기통신업’의 경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의 관계법령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상 ‘지식산업’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으나, 쟁점심판결정은 ‘전기통신업’이 산업단지 입주업종으로 지정되어 있는 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상 ‘지식산업’의 정의 등을 고려하여 ‘전기통신업’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상 ‘지식산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임.

## 지방세법

**[판례] 구 지방세법 제107조 본문 제1호 등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된 취득세·등록세 부과·추징을 위한 과세기준일이 부동산 취득일·등기일부터 기산하여 3년의 유예기간이 경과한 날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납세자승)**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1두58059 판결

**[사안]** 원고는 천안 소재 대학교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학교법인으로, 2009. 3.부터 2011. 4.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면서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 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 제127조 제1항,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0. 3. 31. 법률 제10220호로 제정된 것) 제41조 제1항에 따른 지방세 면제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이를 받아들여 취득세, 등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이 사건 취득세 등”)를 면제하였음. 이후 피고는 2012. 10.경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일로부터 3년 내에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할 것을 통보하였고, 원고는 2012. 11.부터 2014. 4.까지 이 사건 취득세 등을 각 자진신고 또는 피고의 직권고지로 납부하였음. 원고는 2014. 7. 16. 피고에게 이 사건 취득세 등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일로부터 3년 내에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은 구 지방세법 제107조 단서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납부하도록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취득세 등을 환급해 줄 것을 구하는 경정청구 하였고, 피고는 “총 7필지의 취득세 등에 대한 청구는 각하하고, 2017. 3. 16. 현재 부지조성공사를 마친 일부 토지에 대하여 실제 도로 등의 부지조성공사의 완료여부, 동 토지에 학교용 건물 등의 조성계획 및 사용내역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고, 피고는 위 결정에 따른 재조사를 거쳐 2018. 6. 25.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토지는 학교 교육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인정하여 감액·환급한다고 통지하였음.

**[판단]** 구 지방세법 제107조 본문 제1호, 제127조 제1항 본문 제1호 및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취득세·등록세가 비과세 또는 면제된 부동산에 대하여 쟁점 추정사유를 근거로 취득세·등록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는 위 부동산의 취득일·등기일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데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3년의 유예기간 기산일을 법문과 달리 ‘취득일·등기일’이 아니라 ‘정당한 사유가 소멸한 날’로 볼 수는 없으며, 원심은 같은 취지에서, 3년의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에 정당한 사유가 소멸한 경우 그때부터 다시 3년의 유예기간이 진행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취득일·등기일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이후 정당한 사유가 소멸하였더라도 이미 그 취득일·등기일부터 3년의 유예기간이 경과한 이상 쟁점 추정사유에 근거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고,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규정과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 지방세법 제107조, 제127조 제1항 등에서 정한 유예기간 기산일과 과세기준일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음.



**[ 코멘트 ]**

- 과거 대법원은 구 지방세법(1997. 8. 30. 법률 제5406호로 개전되기 이전의 것) 제290조 제1항에 의해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하기 위한 과세기준일이 쟁점이 된 사안에서,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추징을 위한 과세기준일은 부동산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한 날이 되고, 정당한 사유가 소멸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한 날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할 사유에 해당 하는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년의 유예기간이 경과된 당시 법령규정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바 있음(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6두11781 판결).

**[심판례]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어린이집 인가를 받은 후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쟁점부동산을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취소)**  
 조심 2023지4412, 2024. 5. 9.

**[사안]** 청구법인은 A사(“피합병법인”)를 흡수합병하면서, 피합병법인이 소유하고 있던 서울특별시 강남구 외 토지 513.2㎡ 및 그 지상 건물(“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처분청에 쟁점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지특법”) 제19조 제1항(어린이집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및 같은 법 제177조의 2 제1항에 따른 감면율(85%)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지방교육세를 신고·납부하였음.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보육지원재단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쟁점부동산에서 어린이집(“쟁점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것은 지특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청구법인에게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지특법 제57조의 2 제1항(기업합병·분할 등에 대한 감면)에 따른 감면율(50%)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지방교육세 등을 부과·고지함.

**[판단]** 위탁이라 함은 「민법」 제680조에 따라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사무의 처리를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고 할 것인바, 양 당사자의 합의 내용에 따라 위탁의 내용이나 범위가 달라진다고 할 것이며, 즉 당사자의 합의 내용에 따라 다양한 유형의 위탁계약이 체결될 수 있음. 개정된 지특법 제19조 제1항 본문에 취득세 50% 경감사유로 추가된 ‘위탁’은 「영유아보육법」 제24조 제3항에 따른 위탁을 의미하는바, 이는 「영유아보육법」 제1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단독으로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 이루어지는 위탁, 즉 (위탁자가 직접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인가를 받지 못하여) 수탁자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인가를 받아 어린이집의 운영자가 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임. 청구법인의 경우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직접 인가를 받았으므로, 청구법인이 쟁점어린이집의 운영에 관한 모든 법률적인 책임을 부담하는 운영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다만 운영업무 중 일부를 보육지원재단에 위탁한 것에 불과하고, 보육지원재단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인가를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어린이집 운영에 관하여 법률상 직접적인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함. 따라서, 청구법인과 보육지원재단이 체결한 위탁계약은 개정된 지특법 제19조 제1항 본문이 규정하고 있는 위탁계약이나, 법제처 예규(법제처 21-0469, 2021. 10. 18.)가 전제하고 있는 위탁계약의 형태, 즉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위탁하고, 수탁자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인가를 받는 경우’와는 그 내용이 다르다고 할 것이고, 오히려 청구법인과 보육지원재단이 체결한 위탁계약은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세정팀-5511, 2006. 11. 9.)의 사례와 같이, 청구법인 명의로 ‘부동산 취득’과 ‘보육시설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해당함(이러한 점에서 행정안전부 예규와 법제처 예규는 서로 다른 형태의 위탁에 관한 예규일 뿐 두 예규가 모순되거나 충돌되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함). 따라서, 처분청이 위탁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지도 아니한 채 청구법인이 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쟁점부동산을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 코멘트 ]

- 2023. 3. 14. 지특법(법률 제19232호) 개정 시 위탁 직장어린이집 사후관리 규정을 보완하기 위하여 “「영유아보육법」 제14조에 따라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해야 하는 사업주가 같은 법 제24조 제3항에 따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는 규정이 지특법 제19조 제1항 본문 후단에 신설됨.
- 대상심판례는 취득세 50% 경감사유로 추가된 ‘위탁’은 「영유아보육법」 제24조 제3항에 따른 위탁을 의미하는 것이고, 위탁업체와 계약하였다 하더라도 사업자(위탁자)가 실질적으로 직장어린이집 인가취득 및 관리감독 시 운영주체로 보아 직접사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임.

### [예규] 사모부동산 집합투자기구의 신탁재산 관련 부칙 적용 여부 부동산세제과-1409, 2024. 4. 16.

'20년 재산세 분리과세 필요성이 적은 일부 토지에 대하여 제외토록 개정함에 따라 납세자 신뢰보호 차원에서 지방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0728호, 2020. 6. 2.) 부칙 제3조를 제정한 취지 및 소유권 변동이 아닌 법률 개정으로 인한 납세의무자 변동일 경우(수탁자→위탁자) 특례를 계속 해야한다는 우리부 적용 기준(「재산세 부과징수 운영요령」, 부동산세제과-2083호, 2021. 7. 30. 참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수탁자 및 위탁자 관계 등 관련 토지에 대한 신탁계약 자체가 개정 전('20. 6. 2.) 과 동일하게 유지되는 경우에 한해 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에 관한 특례의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됨.

## [ 코멘트 ]

- 대상예규에서 인용하고 있는 행안부 적용 기준(「재산세 부과징수 운영요령」, 부동산세제과-2083호, 2021. 7. 30.)은 비공개인 것으로 보임.
- 2020. 6. 2. 지방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0728호) 개정에 따라 일부 토지가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부칙 제3조는 토지의 납세의무자가 변경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5년까지 연도별로 일정비율을 곱한 면적을 종전과 같이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음.
- 대상예규는 '20년 이전 설립된 사모 부동산 집합투자기구의 신탁 재산에 대해 '21년 재산세 납세의무자 규정 개정으로 별도의 소유권 변동 없이 재산세 납세의무자 명목이 변경된 경우에 대한 지방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0728호, 2020. 6. 2.) 부칙 제3조 적용 여부에 관하여, 납세자 신뢰보호라는 지방세법 시행령 부칙 제3조의 취지를 고려하여 신탁계약 자체가 동일하다면 지방세법 개정으로 인한 납세의무자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부칙을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인바, 사모 부동산 투자회사(리츠)·사모 집합투자기구(부동산펀드)가 2020. 6. 1.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경우에는 이후 토지 소유자의 변동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종전과 같이 재산세 분리과세,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대상 토지로 인정된다고 할 것임.

## 관세법

**[심판례]** 쟁점물품(반사방지막 코팅·프리즘패턴이 형성된 저철분강화유리)을 태양광 모듈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 제8541.90-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또는 기타 안전강화유리로 보아 HSK 제7007.19-1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조심 2024관0022, 2024. 5. 30.

**[사안]** 청구법인은 2018. 9. 5.부터 2023. 6. 16.까지 중국 및 말레이시아 등으로부터 Tempered patterned low iron solar glass(이하 “쟁점물품”)를 수입하면서, 수입신고번호 000호 등 85건으로 쟁점물품을 ‘기타 안전강화유리’로 보아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이하 “HSK”) 제 7007.19-1000호로 분류하여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중 FTA”)에 따른 협정관세율(이하 “FCN1”) 5.6 ~ 6% 및 기본관세율 8%로 각각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함. 청구법인은 2023. 9. 4. 처분청에 쟁점물품이 HSK 제8541.90-9000호 (WTO 양허관세율 0%)의 ‘태양광모듈의 부분품’에 해당한다면서, <별지1>과 같이 관세 000원 및 부가가치세 000원 합계 000원의 환급을 구하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3. 11. 3. 및 2023. 11. 6. 이를 거부함.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 1. 5. 심판청구를 제기함.

**[판단]** 쟁점물품과 같이 반사방지막 코팅 및 프리즘패턴이 형성된 강화유리가 일반 강화유리에 비해 태양광 모듈의 발전 효율을 높여주는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도 태양광모듈에 필수불가결한 부분품으로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쟁점물품을 제7007호의 강화 안전유리로 봄이 타당함.

### [ 코멘트 ]

- 관세법상 부분품과 특계호의 분류는 물품의 특성과 성상, 범위, 용도 등에 따라서 물품별로 판단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함.
- 본 사례는 비록 쟁점물품에 있어 발전 효율을 높여주는 패턴과 코팅을 하였으나, 특계호 분류 우선 원칙의 범위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해석하였고, 해당 패턴과 코팅의 특성이 태양광 모듈이라는 제품에 있어서 필수불가결한 부분품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강화유리로 분류되었음.
- 쟁점사례는 특계호와 부분품의 분류에 있어 다툼이 있는 경우에 부분품의 요건에 더욱 신중하여야 하고, 해당 물품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그 물품이 투입되는 제품에 있어서 명백히 필수적인 요소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부분품 분류를 검토해볼 수 있다는 시사점을 제시하여 줌.

# 삼정회계법인 세무본부

## Tax Knowledge Center

### Key Contacts

이재호

부대표(센터장)

T. 02.2112.0520

E. jlee315@kr.kpmg.com

이윤영

Director

T. 02.2112.7037

E. yoonyounglee@kr.kpmg.com

오혜주

S.Manager

T. 02.2112.0954

E. hoh7@kr.kpmg.com

주미현

S.Manager

T. 02.2112.4602

E. mihyunjoo@kr.kpmg.com

우진욱

S.Manager

T. 02.2112.7802

E. jwoo6@kr.kpmg.com

박재현

S.Senior

T. 02-2112-6596

E. jpark99@kr.kpmg.com

주정연

S.Senior

T. 02-2112-7038

E. jungyeonjoo@kr.kpmg.com

김솔

Staff

T. 02.2112.7906

E. solkim@kr.kpmg.com

본 자료는 일반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으며, 어떤 기업이나 개인의 특정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제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 자료의 내용과 관련하여 의사 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당 법인의 전문가와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ome.kpmg/kr](https://home.kpmg/kr)

The information contained herein is of a general nature and is not intended to address the circumstances of any particular individual or entity. Although we endeavour to provide accurate and timely information, there can be no guarantee that such information is accurate as of the date it is received or that it will continue to be accurate in the future. No one should act on such information without appropriate professional advice after a thorough examination of the particular situation.

© 2024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a Korea Limited Liability Company and a member firm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Limited, a private English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ll rights reserved.

The KPMG name and logo are trademarks used under license by the independent member firms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